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5. 9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전략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획전략과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행정환경의 변화와 법률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, 조례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고문변호사 위촉 가능 인원을 현행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해지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(안 제2조제1항)
- 다음으로, 조문 내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'기타'를 '그 밖'으로, '전일'을 '전날'로, '감안하다'를 '고려하다'로 변경하였습니다.(안 제3조제1항제5호 등)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5년 8월 27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급증하는 법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조례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성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오니,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 5091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5. 9. 3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기획전략과장)

1. 제안이유

-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행정의 다변화, 고도화에 따라 확대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2. 주요내용

-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(안 제2조제1항)
 - (현행)5명 이내 → (확대)8명 이내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 정비 등(안 제3조제1항제5호 등)
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기타→ 그 밖에, 전일→ 전날, 감안하다→ 고려하다)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현행 조례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5. 7. 21. ~ 8. 11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 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의견 없음
 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전단 중 “5명”을 “8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 단서 중 “전일”을 “전날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의3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의3(소송비용 특례)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----- 제6조의3(소송비용 특례) -----

----- 고려하
여 -----

-----.

□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달서구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일반고문변호사 및 특별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라 한다)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변호사(법무법인을 포함한다) 중에서 5명 이내의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반고문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③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일반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 추천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직무 등)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구(소속기관 포함)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
2.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
3. 구 소속공무원(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4. 각종 이의신청,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

6.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

7.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

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.

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, 소송현황 등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3조의2(자문회의 등) ①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전략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자문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임기 및 위촉 해제) ① 일반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,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.

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
3.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
4.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5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5조(사건실적부 비치)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(수당)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6조(소송비용 등) ① 일반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,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의2(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) ① 구청장은 구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·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

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이 신청하되,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.

1.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
2. 해당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 관련 세금계산서 등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제6조의3(소송비용 특례)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로 종결된 경우에는 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소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【참 고 자 료】

□ 고문변호사 자문실적

구분	자문 실적		위촉인원
	2023	2024	
대구시	350	469	10
수성구	113	102	4
달서구	99	184	4
중구	30	46	1
동구	139	163	4
서구	18	22	3
남구	14	21	2
북구	62	88	3
달성군	-	36	1
군위군	24	20	2

□ 고문변호사 정원현황

구분	위촉 정원	월액수당/건당 자문료(만원)
대구시	12	20/10
수성구	4	25/10
달서구	5	25/0
서울 송파구	20	20/10(부가세 별도)
서울 강남구	8	0/20(부가세 별도)
서울 강서구	12	15/0(부가세 별도)
서울 강동구	15	15/10
인천 서구	10	0/20(부가세 별도)